

운영규정 개요

I. 기본정보

기관명	힐링시니어주간보호센터	기관기호	2-41150-00894
설치일자	2022년 12월 01일	급여 종류 및 형태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628번길 26. 302호		
전화	031-853-6630	팩스	031-853-6631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II.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24인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온라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내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오프라인(전단지 등),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III.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급여계약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해지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신원인수인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이용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이용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IV.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	---------------